##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4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 오영훈·박성준·홍성국

강민정 • 야진비 • 강선우

임호선 · 김종민 · 이탄희

김영배 · 김수흥 · 박완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16조"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제9조제 2항과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사전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			
	하여 제9조제2항과 제5항의 요			
	건을 갖춘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사전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u>④</u> 제3항에 따라			
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u>⑤</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u>제16</u>	<u>제16</u>			
<u>조</u> , 제24조제1항·제5항·제6	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는			
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지방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ユ	요지	를	공	丑	카
卫	관할선거:	관리	위원	회이	1	통.	기
하여	여야 한다.						

-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 지한 경우
- 2. 3. (생략)
- ②・③ (생 략)
-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부담한다.
  - 1. ~ 4. (생 략)
  - ②・③ (생략)

1. <u>제8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u>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u>.</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